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5
----------	-----

제출년월일 : 2016. 3. 4.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1. 제안이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등을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연임제한 규정 마련(안 제9조제7항)

나. 위원장의 권한 축소: 기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봄 (안 제10조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3조(자치법규 정비)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16. 2. 5. ~ 2016. 2.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개선 권고 반영(위원회 연임제한 규정)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란을 “사람”이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고한 자”를 “제고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기여한 자”를 “기여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기여한 자”를 “기여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기여한 자”를 “기여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의장,”를 “지방자치단체의 장,”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외빈 또는”을 “외빈이나”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추천된 자”를 “추천된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원을 할”을 “지원할”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여 받은 자에”를 “수여받은 사람에”로, “취소여부”를 “취소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없을때”을 “없을 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연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으로, “소속공무원의 임기는그”를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u>자</u>"란 다음과 같다.</p> <p>가. 대내·외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u>제고한 자</u></p> <p>나.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 및 문화·예술활동 증진에 크게 <u>기여한 자</u></p> <p>다. 강남구 경제 발전에 크게 <u>기여한 자</u></p> <p>라.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u>기여한 자</u></p> <p>2. "외빈"이란 강남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으로서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료, 주한외교사절, <u>지방자치</u></p>	<p>제2조(용어의 정의) ----- ----- -----.</p> <p>1. ----- ----- ----- <u>사람</u>"이란 ----- -----.</p> <p>가. ----- ----- ----- <u>제고한 사람</u></p> <p>나. ----- ----- ----- <u>기여한 사람</u></p> <p>다. ----- ----- <u>기여한 사람</u></p> <p>라. ----- ----- ----- <u>기여한 사람</u></p> <p>2. ----- ----- ----- <u>지방자치</u></p>

단체의장, 국제평화유지 및 친선 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3. 4. (생략)

제3조(수여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구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생략)

3.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강남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또는 해외 입양인 중 구정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생략할

단체의 장, -----

----- 사람을 -----

3. 4. (현행과 같음)

제3조(수여대상) -----

----- 사람으로 -----.

1. -----

----- 사람

2. (현행과 같음)

3. -----

----- 외빈이나 -----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

----- 추천된 사람 -----

수 있다.

제6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① 제5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에게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7조(예우 및 사후관리) ① 명예

구민에게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강남구 방문 시 체재 및 행정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8조(명예구민증 취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7조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구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③ (생략)

제9조(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

-----.

제6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① -----
----- 사람에게

-----.

② -----
----- 사람-----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예우 및 사후관리) ① -----

----- 지원할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명예구민증 취소) ① (현행

과 같음)

② -----
----- 사람은 -----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

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② ~ ④ (생략)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구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명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강

회) ① -----

-----.

1. -----
----- 사람에 -----

2. ----- 수여받은 사
람에 ----- 취소 여부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없을 때 -----
-----.

⑥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있는 사람

⑦ -----
----- 한 차례에 한정하여

남구 소속공무원의 임기는그 직
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
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생
략)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생략)

연임--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

- . -----

-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
과 같음)

② -----

- . -----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수정하는 단순 개정사항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수정하는 단순 개정사항으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자치행정과 행정7급 임정빈(3423-5194)